

# 양주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

의안	70456
번호	

제출연월일 : 2017. 11. .

제출자 : 양주시장

## 1. 제안이유

법제처에서는 상위법령의 제·개정사항 미반영(정부조직법, 민법 성년후견 경과규정), 장애인 차별적 요소 완화, 일본식 한자어를 우리말로 순화 등 개선을 권고한 사항으로 일괄개정을 통하여 조례를 정비하고 자 함

## 2. 주요내용

### 가. 민법 성년후견제도 경과규정 마련

- 양주시 다문화가족지원에 관한 조례
- 양주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
- 양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

### 나. 장애인 차별적 요소 완화

-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 운영 조례

### 다. 「정부조직법」 개정사항 반영

- 양주시 건축 조례
- 양주시 도시와 농촌 간의 교류활성화 지원 조례
- 양주시 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
- 양주시 정보화 조례

- 양주시 전통 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·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
- 양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
-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
- 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
- 양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·제빙에 관한 조례

#### 라. 일본식 한자어의 정비

- 양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
- 양주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 지원 조례
- 양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
- 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
- 양주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

### 3. 참고사항

가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 : 해당없음

2) 부서협의

- 비용추계 : 해당없음
- 규제심사 : 해당없음
- 부패영향평가 : 해당없음
- 성별영향분석 평가 : 해당없음

## 양주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

제1조(「양주시 다문화가족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「양주시 다문화가족지원에 관한 조례」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부칙 제1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제2조(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) 제7조제1호의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. 를 신설한다.

제2조(「양주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「양주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」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부칙 제1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제2조(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) 제3조제1호의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. 를 신설한다.

제3조 (「양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」의 개정) 「양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」  
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부칙 제3조를 부칙 제4조로 하고, 부칙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부칙 제3조(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) 제9조제1호의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 
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 
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. 를 신설한다.

제4조 (「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 운영 조례」의 개정) 「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  
운영 조례」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6호 중 “ 동물을 동반한 사람”을 “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장애인이  
보조건을 동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.”로 한다.

제5조 (「양주시 건축 조례」의 개정) 「양주시 건축 조례」 중 일부를 다음과 같  
이 개정한다.

제24조제1호 중 “농림수산부 또는 농업기반공사”를 “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한국  
농어촌공사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농업기반공사”를 “한국농어촌공사”로  
한다.

제6조 (「양주시 도시와 농촌 간의 교류활성화 지원 조례」의 개정) 「양주시 도  
시와 농촌 간의 교류활성화 지원 조례」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나목 중 “농림수산식품부장관”을 “농림축산식품부장관”으로 한다.

제7조 (「양주시 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」의 개정) 「양주시 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2항 중 “문화관광부”를 “문화체육관광부”로 한다.

제8조 (「양주시 정보화 조례」의 개정) 「양주시 정보화 조례」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5항 중 “미래창조과학부장관”을 “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”로 한다.

제12조 및 제17조 중 “행정자치부장관”을 “행정안전부장관”으로 한다.

제9조 (「양주시 전통 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·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「양주시 전통 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·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」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1항제2호 중 “중소기업청장”를 “중소벤처기업부장관”으로 한다.

제10조 (「양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의 개정) 「양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의2조 중 “행정자치부장관”를 “행정안전부장관”으로 한다.

제11조 (「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의 개정) 「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3항 및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중 “행정자치부장관”을 “행정안전부장관”으로 한다.

제12조 (「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」의 개정) 「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」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4조제2항, 제26조제2항, 제27조제2항, 제28조제1항 중 “행정자치부”를 “행정안전부”로 한다.

제13조 (「양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·제빙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「양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·제빙에 관한 조례」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행정자치부령”을 “행정안전부령”으로 한다.

제14조 (「양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」의 개정) 「양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」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구좌”를 “계좌”로 한다.

제15조 (「양주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 지원 조례」의 개정) 「양주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 지원 조례」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3항 중 “대출절차·이자불입”을 “대출절차·이자납입”으로 한다.

제16조(「양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의 개정) 「양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제2호 중 “지득한”를 “알게 된”로 한다.

제17조 (「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」의 개정) 「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」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제1항 중 “지참·조퇴”를 “지각·조퇴”로 한다.

제18조 (「양주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」의 개정) 「양주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」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단서 중 “사리도”를 “자갈도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굴착표준 최적구배”를 “굴착표준최적경사”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담당관·과·소		기획예산과
입 안 자	담당관·과·소장 직위·성명	기획예산과장 강 수 현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의회법무팀장 김 정 순
	담당자 성명(전화)	지방행정주사보 우수정(8082-5061)

**붙임 1****부서 의견조회 결과 요약서**  
**[부패영향평가, 성별영향평가, 규제심사 등]**

## ■ 부서 의견조회 결과 요약서

협의부서	협의내용	조치내용
감사담당관	○ 부패영향평가 : 해당없음	
기획예산과	○ 규제심사 : 해당없음	
기획예산과	○ 비용추계 : 해당없음	
여성보육과	○ 성별영향평가 : 해당없음	

## ■ 미반영 사유 : 조치내용 미반영시 사유 기재